

「함평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(2025)」 기창업자 모집 공고

함평군이 주관하고 (사)전남고용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청년 창업자를 지역에 유치하여 지역 내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및 청년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「함평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 2025」 기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5. 05. 09.

(사)전남고용노동연구원장

I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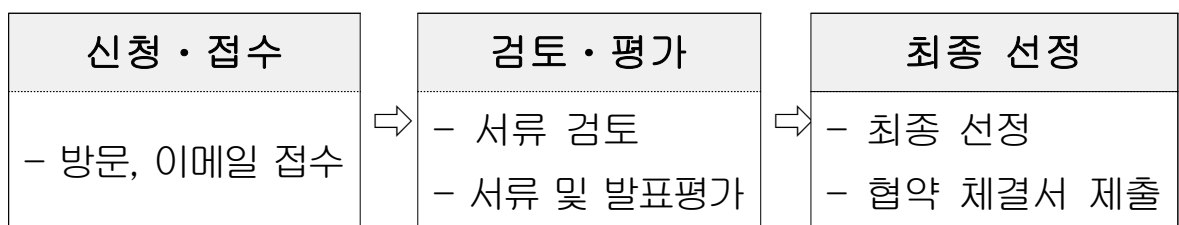
- 사업명 : 함평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(2025)
- 사업기간 : 2025. 3. 1. ~ 2025. 12. 31.
- 지원내용

구분	지원 내용	금액	비고
직접지원금	창업공간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비	최대 1억원 이내 지원	함평군→창업자
간접지원금	사업수행을 위한 홍보비, 재료비, 임차비 등	총 700만원 이내 지원	수행기관→창업자
부가 지원	창업실무 교육, 크라우드펀딩 지원,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등	-	수행기관→창업자

- 모집인원 : 5명
- 모집대상 : 공고일 (2025. 05. 09.) 기준 만 49세 (1975년생) 이하
청년 함평군 관내 창업을 원하는 기창업자

* 신청자격은 동 공고 'II. 신청자격 및 요건' 참조

- 지원절차



II 신청 자격 및 요건

- 공고일(2025. 05. 09.) 기준 만 49세(1975년생) 이하 청년 기창업자로 신청자가 대표자인 사업자
 - * 신청자 생년월일 기준일 : 1975년 5월 10일 이후 출생자
- 함평군 관내·관외, 업종에 관계없이 연 매출 1억 2천만 원 이상 또는 월 평균 매출 1천만 원 이상인 기창업자(단, 프랜차이즈 업종은 제외)
 - *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해당 시 신청 불가
 - * 선정된 자는 함평군 관내에서 창업을 진행하여야 함
 - * 관내·외 기창업자 모두 지원 가능하나,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을 폐업 또는 리모델링 불가
 - * 관외 거주자는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함평군으로 전입하여야 함
- 우선 선발 대상
 - * 음식명장, 푸드 경연대회 입상자 등
 - * 함평 관광상품, 브랜드 특산물 등의 아이টে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자
- 신청 제외 대상

① 공고일 기준 만 49세 이상인 자('75. 5. 9. 이전 출생자)

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

< ② 조건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3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< ③ 조건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 ([참고 1] 창업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)

⑤ 2025년 동 사업 수행기관의 총괄(사업)책임자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

⑥ 2025년 동 사업 창업자 선정을 위한 수행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

⑦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⑧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

⑨ 기타 수행기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Ⅲ 신청 및 접수

- 공고 기간 : 25. 5. 9. (금) ~ 25. 5. 23. (금)
- 신청 접수 기간 : 25. 5. 9. (금) ~ 25. 5. 23. (금) 18:00까지
- 신청 방법
 - 이메일 : (사)전남고용노동연구원 청년 기창업 담당자
☎ 061-894-7758 ,(hpjobs@naver.com)
 - 작성된 모든 파일은 원본(한글, PPT 등)으로 제출
 - * 접수시 파일명 : 함평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(2025) 기창업자_이름
 - 방문접수 : 전남 함평군,읍 중앙길 164, 나비어울림센터 3층
- 제출서류
 - 참여신청서 1부 📎 [붙임1]
 - 개인정보동의서 1부 📎 [붙임2]
 - 사업계획서 1부 📎 [붙임3]
 - *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(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)
 -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(해당자만 제출)

IV 평가 및 선정

○ 평가 절차 : 총 2단계 평가(서류 → 발표)를 통해 최종 선정

< 함평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(2025) 기창업자 평가 절차(안) >

① 서류 검토	② 서류평가 (2배수 내외)	③ 발표평가	④ 최종 선정
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	제출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류 평가 (2배수 내외 선정)	예비창업자 발표 및 질의응답	선정 확정 및 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
5.26(월)	5.27(화)	5.28(수)~5.29(목)	5.30(금)

신청자의 서류검토는 수행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
선정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

※ 추진 일정에 따라 연장 또는 변동될 수 있음

○ 평가 방법

- 서류검토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- 서류평가 :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(가점 포함)하여,
발표평가 대상자 확정(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)
- 발표평가 : 창업아이디어 동기, 기창업자의 역량, 타 기업/기관과
협업방안 및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발표평가는 창업자(동 사업 신청자)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,
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아이디어에 대해 심층 평가
 - * 평가시간 : 25분 이내 (발표 15분 내외 + 질의응답 10분 이내)
 - * 평가방법 :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운영 가능

○ 평가지표

- 창업아이디어에 대한 사업추진성, 타당성, 성장전략, 창업자의 역량,
타 기업/기관과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* 취득점수가 평가항목별 배점의 최고점 순위로 선정.

〈 서류·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〉

평가항목	서류평가 세부내용	발표평가 세부내용	배점
1. 문제인식 (Problem)	시장·고객분석 현황, 창업아이디어 개발 목적 등	창업아이디어 개발 동기·목적 등	30
2. 실현가능성 (Solution)	진입 목표시장 분석, 제품·서비스 개발방안 등	창업아이디어의 차별성, 협약기간 내 실현 가능성 등	30
3. 성장전략 (Scale-Up)	창업아이디어의 사업화 방안 추진일정, 자금조달계획 등	성장 가능성, 기대성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 등	20
4. 팀 구성 (Team)	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	조직 운영방안, 고용계획, 팀 역량 강화방안 등	20
5. 유사사업 참여	3년이내 유사사업 참여이력	-3	-10 (-3,-5,-10)
	2년이내 유사사업 참여이력	-5	
	1년이내 유사사업 참여이력	-10	
합 계			90~100

* 면접점수 (100점)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, 면접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선발하지 아니함

* 동점자 처리기준 : 면접, 취업 취약계층, 취업여부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

○ 최종 선정

-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, 최종 선정 공고
- ‘함평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(2025)’ 협약체결 의향서를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(6월 5일 17시까지) 제출해야 함

* 정해진 기한 내 협약체결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(예비후보자)를 선정

-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수행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
* 선정평가 결과 창업자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V 후속 추진계획

<1단계> 사업지 확보 및 교부신청 준비

사업지 선정	창업자	사업장을 직접 발굴·선정
예산 운영계획서	창업자 ↔ 함평군	사업계획서 및 예산 운영계획서 작성·제출
지급(이행)보증 보험	창업자 / 공사업체	지급(이행)보증보험 가입

<2단계> 보조금 교부 및 공사 추진

보조사업 지원신청서	창업자 ↔ 함평군	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작성·제출
보조금 교부신청	창업자 ↔ 함평군	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·제출
보조금 교부 결정	창업자 ↔ 함평군	보조금 교부 결정
공사 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	창업자 ↔ 공사업체	자체 (수의)계약 또는 함평군 계약대행
공사 착공 및 준공 검사	창업자 ↔ 함평군	착공 및 준공 신고서 작성·제출
사업자등록증 제출	창업자 ↔ 수행기관	9월 30일까지 제출
보조금 청구서 제출	창업자 ↔ 함평군	준공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

<3단계> 교육 및 부가지원 참여

창업 실무교육	창업자 ↔ 수행기관	지원금 사용법, 노무관리
크라우드 펀딩 참여	창업자 ↔ 수행기관	제품 개발 및 홍보, 펀딩 운영
국제 식품박람회 참여	창업자 ↔ 수행기관	부스 운영 및 제품 전시·판매

※ 참여자는 사업지 확정, 보조금 교부신청, 공사 완료 등 모든 절차를 마친 후, 사업자등록증을 2025. 9. 30.(화)까지 필히 제출하여야 함.

※ 모든 절차는 특이사항이 있을 시 변동 가능

<1단계> 사업지 확보 및 교부신청 준비

1. 사업지 선정

- 창업자는 함평군 관내에서 창업에 적합한 사업장을 직접 발굴·선정

2.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운영계획서 제출

○ 내 용

- 지원금의 사용 항목, 금액, 세부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운영계획서 제출

* 보조금 교부 및 이행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

3. 지급(이행)보증 보험 가입

○ 내 용

- 간접지원금(총 700만원)은 창업자가 지급(이행)보증보험에 가입
- 직접지원금(최대 1억원이내)은 공사업체가 지급(이행)보증보험에 가입

* 지급(이행)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의 필수 요건이며,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

* 사업계획서 및 예산·운영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(이행)보증보험 가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
<2단계> 보조금 교부 및 공사 추진

1. 간접지원금

○ 700만원(간접지원금) 선지급

- 간접지원금 700만원 중 임차비 40%(280만원), 재료비 20%(140만원), 홍보비 40%(280만원)로 기본 편성공공요금, 홍보비, 임차비 및 소모성 자재비 등 가능. 자산성 물품 지원 제외
- 재료비(판매 상품 생산을 위한 재료비), 임대료(장소 및 장비 임차), 홍보비(각종 온·오프라인 홍보 등)

* 항목별 최대 50%까지 편성 가능(지출에 따라 편성 비율 조정 가능)

* 단, 재료비는 구입가액 50%만 인정(자부담 50%), (예)280만원 사용 시 지원금 140만원 지원)

2. 직접지원금

○ 최대 1억원(인테리어 지원금) 지원

- 창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운영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지자체에서 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결정
- 전기, 소방, 통신은 별도 분리 발주 항목이며, 기타 공사 항목은 ‘리모델링’ 으로 통합 발주
 - * 가구 및 일반 집기류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. 단, 환풍시설, 시스템 에어컨 등 건축물 내 설치가 필요한 공사 항목은 포함 가능
- 공사업체 선정은 「지방계약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(수의)계약 또는 함평군 계약대행 절차에 의해 창업자와 군청 간 협의하여 진행
 - * 자세한 계약 진행 방식과 절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
 - * 세부 유의사항은 ‘선정 후 유의사항’ 참조

3. 보조금 교부 신청 유의사항

-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현재 보유 자산 및 부채 현황 기재
- 설계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, 보조금 집행 가능
 - * 설계비 자부담의 경우, 보조금 교부신청 시 설계서 제출
 - * 설계비 보조금 집행이 필요한 경우,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하는 예산 운영계획서 내 ‘설계용역’ 항목을 포함
 - *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용 불가
 - * 설계서는 준공 단계에서의 공사 비교 검토를 위한 기준 자료로 활용(필수서류)

3.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단계별 필요 서류

1. 보조사업 지원신청서 제출 (창업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작성·제출(창업자→함평군) - 검토 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(함평군)
↓	
2. 보조금 교부신청 (창업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·제출(창업자→함평군) - 교부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,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, 설계서, 이행(지급)보증 보험증서, 사업자등록증,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
↓	
3. 보조금 교부결정 (함평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(함평군→창업자)
↓	
4. 공사 수행 업체 선정 (창업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체 계약(창업자) 또는 계약 대행(함평군) 중 선택 - 「지방계약법」 준수(절차, 서류 등) - 견적서, 공사계약서, 설계내역서(시방서, 도면), 물량내역서,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등
↓	
5. 공사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착공 신고(창업자 또는 시공사→함평군) - 착공신고서 및 관련 서류 일체(공사계약서, 산출내역서, 공정표, 도면, 현장사진, 현장대리인 등)
↓	
6. 준공 신청 및 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준공신고서 제출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준공 - 준공신고서 및 관련 서류 일체(세부 준공내역, 현장사진 등)
↓	
7. 보조금 청구서 제출 (창업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조금 청구서 제출(창업자→함평군) - 보조금 지급 청구서, 완료보고서(실적보고서), 정산보고서, 계약서, 착공계, 보조금 통장사본, 현장사진, 사업자등록증 등
↓	
8. 보조금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조금 교부결정 계획에 따라 지급

※ 상기 절차 및 서류는 개략적인 사항으로, 실제 사업 추진 시 일부 변동 가능

<3단계> 교육 및 부가지원 참여

1. 창업 실무교육

- 교육기간 : 공사 기간 내 병행
- 교육내용

구 분	교육내용	교육시간
노무관리 교육	노무관리 기본은 노동법 기본 알자	4시간
	안전재난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등	
	4대보험 가입과 퇴사등 전산신고	
세무관리 교육	창업설립과 여러 신고업무	4시간
	사업운영과 실적:재무제표 기본	
	효율적인 운영과 유지:자료관리 및 내부관리	
	세금이 돈이다, 운영과 관리:세법과 세금 보조금 집행 및 관리	

* 선정된 자는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.

* 교육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

2. 함평 크라우드 펀딩 지원

- 기 간 : 10. 1.(수) ~ 12. 19.(금)
- 내 용

- 해피빈 펀딩 플랫폼 사용료, 콘텐츠 제작 지원, 목표금액 달성지원
- 크라우드 펀딩 개시에 필요한 절차 진행, 콘텐츠 제작 등 참여자가 원활하게 펀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제공

* 펀딩 등록 및 운영 일정은 별도 사전 안내 예정

3 국제 식품박람회 참여

- 기 간 : 11. 20.(목) ~ 11. 23.(일)
- 내 용

- 국제식품박람회 부스비 등 참가에 필요한 기본 비용 지원

* 참가 대상 박람회 및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

* 참가자 개인 부대비용(교통비, 체류비 등)은 일부 자부담할 수 있음

VI 유의사항

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“형법”, 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”, 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”, “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”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, 창업자)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④ 함평군 및 사)전남고용노동연구원은 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” 제32조, 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”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.

○ 신청시 유의 사항

- 동 사업은 신청한 창업아이디어로 창업한 자 또는 창업(사업자등록)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,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함평군 관내에서 창업(사업자등록)을 진행할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
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*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,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써 판단하여 선정취소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
 - * 동일·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

- 동 사업 신청자가 동일한 아이디어로 <함평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(2025)>에 참가할 수 있지만 중복 선정은 불가

○ 평가 중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, 평가대상에서 제외
- 동 사업에 신청한 신청자가 직접 평가과정에 (발표평가 등)참여하여야 하고,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
- 수행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 동의 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
○ 선정 후 유의사항

- **협약종료 30일 이전까지**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창업아이디어 관련 업종으로 창업(사업자등록)을 이행해야 하며, 선정된 창업기업은 함평군에 사업자등록 또는 본사 주소를 이전해야 함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여 선정될 경우 함평군 창업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,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함평군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수행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‘신청자격 및 요건’ 과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
- 선정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, 포기각서를 작성·제출해야하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 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 - 선정자는 수행기관의 안내에 따라 창업지원 교육 및 사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
 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, 협약 취소,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 - * 종료 후 점검 예정
 - 동 사업의 수시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 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 - 협약기간 중 신청(대표)자와의 연락두절 등 그 기간이 14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, 동 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약 해지 등 조치 될 수 있음
 - 함평군과 수행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 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 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
-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사)전남고용노동연구원 담당자(☎ 061-894-7758)로 문의 바랍니다.

참고 1

창업지원 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홍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, 구직등록 여부, 계약 체결, 중앙부처·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(사업 관련 각종 연구·설문조사 포함)
- 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·이용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·이용기간
필수항목	(본인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성별, 연락가능한 전화번호,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 포함)	동의일로부터 10년
	(가구원) 성명, 주민등록번호	참여자 선정종료시
선택항목	(본인 및 가구원) 재산, (본인) 기초생활수급자여부, 차상위계층여부,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	참여자 선정종료시
취업취약 계층항목	(본인) 북한이탈주민여부, 여성가장여부, 위기청소년가족여부, 결혼이민여성여부, 장기실업자여부, 장애인여부,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	동의일로부터 10년
	(본인 및 가구원) 건강보험료 부과액	참여자 선정종료시

2.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, 국가보훈처, 지방자치단체, 한국고용정보원, 건강보험공단, 국세청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·제공 목적 : 건강보험부과금액,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, 가구재산,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, 구직활동정보,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,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
-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: (본인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참여기간, 월별 지급액, 계좌번호,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(가구원) 주민등록번호, 참여자 정보
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기간: 제공일로부터 6개월(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)

3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
- 수집·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: (본인)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일 경우) (가구원)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일 경우)
- 고유식별정보의 보유·이용기간 : (본인) 동의일로부터 10년, (가구원) 참여자 선정 심사

※ 귀하는 상기 1~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(참여자 선정 제한 등)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(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)

※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/미동의 자필 서명란

성명	관계	1. 수집·이용	2. 제공	3. 고유식별정보처리	서명
	본인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
	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
	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
	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

20 년 월 일

사)전남고용노동연구원 귀하

(붙임3)

「합평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(2025)」 사업계획서

※ 본문 15page 내외로 작성(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), 양식 내에 있는 '파란색 안 내 문구'는 전부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, 양식의 목차, 표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(행추가는 가능,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)하며, 필요시 사진(이미지) 또는 표 추가 가능

□ 일반 현황

창업아이디어명					
지원유형	창업기업				
신청자 성명	홍길동(남/여)	생년월일	1900.00.00		
기업명	0000	사업장 소재지	00도 00시 (사업자등록증 본 소재지)		
개업연월일 (회사성립연월일)	2000. 00. 00	사업자 구분	개인사업자 / 법인사업자 / 공동대표(개인, 법인)		
기업로고		홈페이지	www.000000 (없을 경우 공란으로 제출)		
주요성과('24년)					
고용(명)			매출(백만원)		
0명 (대표자 제외) ※ 신청일 기준 현재 고용인원 ※ 단, 4대보험 가입 대표 가능			00백만원 ※ '24년 총 매출		
조직 구성					
순번	직위	성명	담당업무	주요경력	상태
1	매니저	000	마케팅 담당	00기업 홍보 경력 0년	완료
2	직원	000	콘텐츠 개발	00대 경영학 전공	예정('00.0)
...					
...					
...					
...					
...					

□ 개요(요약)

명 칭	※ 예시1 : 게토레이 예시2 : Windows 예시3 : 알파고	범 주	※ 예시1 : 스포츠음료 예시2 : OS(운영체제) 예시3 : 인공지능프로그램
아이디어 개요	※ 본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 또는 구체화하고자 하는 제품·서비스 개요 (사용 용도, 사양, 가격 등), 핵심 기능·성능, 고객 제공 혜택 등 ※ 예시 : 가벼움(고객 제공 혜택)을 위해서 용량을 줄이는 재료(핵심 기능)를 사용		
배경 및 필요성	※ 제품·서비스 개발 또는 구체화 필요성과 해결 방안, 주요 목적 등 ※ 제품·서비스 목표시장(고객) 설정, 목표시장(고객)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		
현황 및 구체화 방안	※ 사업 참여 이전 제품·서비스 개발 또는 구체화 준비 이력, 단계(현황) 등 ※ 협약기간 내 개발 또는 구체화 예정인 최종 산출물(형태, 수량 등) ※ 대표자, 팀원, 업무파트너(협력기업) 등 역량 활용 계획		
목표시장 및 사업화 전략	※ 본 사업 참여 시 개발 또는 구체화할 제품·서비스의 수익화 모델(비즈니스 모델) ※ 목표시장(고객) 확보 및 사업화 전략 ※ 경쟁제품·서비스 대비 자사 제품·서비스의 차별성, 경쟁력(보유역량) 등		
이미지	※ 제품·서비스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사진(이미지)·설계도 등 삽입 (해당 시)	※ 제품·서비스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사진(이미지)·설계도 등 삽입 (해당 시)	
	< 사진(이미지) 또는 설계도 제목 >	< 사진(이미지) 또는 설계도 제목 >	

1. 문제인식 (Problem)

1-1. 창업아이디어 배경 및 필요성

- ※ 창업아이디어(제품·서비스) 개발·구체화 배경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, 동기 등을 제시
 - ① 외부적 배경 및 동기(예 : 사회·경제·기술적 관점, 국내·외 시장의 문제점·기회 등),
 - ② 내부적 배경 및 동기(예 : 대표자 경험, 가치관, 비전 등의 관점)
- ※ 배경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해결방안, 필요성, 제품·서비스를 개발·구체화하려는 목적 기재

○

-

-

○

-

-

1-2. 창업아이디어 목표시장(고객) 현황 분석

- ※ 제품·서비스 개발·구체화 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정의된 시장(고객)에 대해 제공할 혜택(가치)과 그 행위(가치)를 제공할 세부 목표시장(고객)을 설정
- ※ 진출하려는 시장의 규모·상황 및 특성, 경쟁 강도, 향후 전망(성장성), 고객 특성 등 기재
- ※ 활용하는 지역과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지역특색 이해 수준(정량, 정성 등) 기재

○

-

-

○

-

-

2. 실현가능성 (Solution)

2-1. 창업아이디어 현황(준비 정도)

- ※ 제품·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, 해당 제품·서비스 개발·구체화 등을 위해 본 사업에 신청하기 이전까지 기획, 추진한 경과(이력) 등에 대해 기재
- ※ 사업 신청 시점의 제품·서비스 개발·구체화 현황, 목표한 시장(고객)의 반응, 현재까지의 주요 정량, 정성적 성과 등 전반적인 현황 기재

○

-

-

2-2. 창업아이디어 실현 및 구체화 방안

- ※ 목표시장(고객) 분석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핵심 기능·성능, 디자인, 기타 사업화 활동 등 구체적인 개발 또는 구체화 방안 등 기재
- ※ 기존 시장 내 경쟁제품·서비스와의 비교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, 개선사항에 대해 경쟁력, 차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사의 보유역량 등 기재
- ※ 사업 수행을 통한, 지역 내 방문객 유도 가능성 등 지역가치 창출 가능성 기재

○

-

-

2-3. 추진일정(2025년 12월까지 계획)

순번	추진 내용	추진 기간	세부 내용
1	시장 분석	25년 3월	입지 및 상권 분석
2	시제품 개발	25년 4월 ~ 5월	외주 용역을 통한 시제품 개발
3	인테리어 등	25년 7월	외주용역을 통한 인테리어
4	가 오픈	25년 8월 ~	가오픈 기간
5	오픈 프로모션	25년 9월 ~	이벤트, 프로모션 진행

3. 성장전략 (Scale-up)

3-1. 창업아이디어 경쟁력 확보방안(차별화 방안) 및 성과창출 가능성

- ※ 개발·구체화하고자 하는 제품·서비스의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
- ※ 지역 자원의 구체적인 활용 및 차별화를 위한 방안, 향후 창출할 수 있는 성과 내용 등 기재

○

-

-

3-2. 창업아이디어 사업화 추진 전략

- ※ 정의된 목표시장(고객)에 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객 확보, 수익 창출 전략
- ※ 정의된 목표시장(고객)에 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산 및 출시 방안 등
- ※ 협약기간 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화 성과(매출, 투자, 고용 등) 기재
- ※ 협약기간 종료 이후 사업 지속을 위한 구체적인 생존율 제고 방안 수립

○

-

-

○

-

-

4. 팀 구성 (Team)

4-1. 대표자의 보유역량

- ※ 개발·구체화하고자 하는 제품·서비스의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
- ※ 지역 자원의 구체적인 활용 및 차별화를 위한 방안, 향후 창출할 수 있는 성과 내용 등 기재

○

-

-

* 본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 또는 허위 기재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,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화 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